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안 제23조).

II. 검토의견

1.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공고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준용 관련 사항(안 제14조제3항)

-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기획·추진하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을 준용하도록 함.
- 다만, 안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준용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공모시 미준용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대체할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것(「지방자치법」 제29조¹⁾)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1)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건
발과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공모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u>대체할</u> 규정을 마련하여 <u>야 한다.</u>	발과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공모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u>대체할</u> 규칙을 제정하여 <u>야 한다.</u>

2.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관련 사항(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²⁾,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³⁾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집적단지”)의 활성화 또는 상호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인 “인공지능집적단지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⁵⁾”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⁶⁾” 등과는 다르게 소관 부처 장관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지정 또는 고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마련함.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3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3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기술단지 등을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시행일 등 부칙 관련 사항(안 부칙)

-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한 안 제7조제1항⁷⁾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활용 또는 지방채의 발행 등 재정·세제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지방회계법」 제6조⁸⁾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일인 1월 1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안 제10조제1항 단서⁹⁾는 관할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유사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구의 위원을 잔여 임기 내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보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안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8)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9) 안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

4. 그 밖의 사안

- 제정안의 그 외 부분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정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는 등¹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

10)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용어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관계 기관 의견

- 교육부는 안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간주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3(2026. 8. 11. 시행예정)¹¹⁾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명시하자는 입장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및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¹²⁾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11)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2026. 8. 11. 시행 예정)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도와 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12) 안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및 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¹³⁾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법률 제정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음.

(전문위원 박 해 진)

-
7.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 아. 시험생산
 -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